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-28호

「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13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, 과부하 누전 차단 멀티탭과 콘센트용 자동소화패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4조)

### 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5. 11. 13. ~ 11. 18. (5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##### 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
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: 061-830-6065, 팩스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과부하 누전차단 멀티탭
3. 콘센트용 자동소화 패치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4조(비용의 지원) ① 군수는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 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 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비용의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  략) <u>&lt;신   설&gt;</u> <u>&lt;신   설&gt;</u>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   략)	2. <u>고용량 과부하 누전차단 멀티탭</u>
② (생   략)	3. <u>콘센트용 자동소화 패치</u>
	4. (현행 제2호와 같음)
	② (현행과 같음)

**□ 소방기본법**

**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, 재난·재해, 그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붙임 2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: \_\_\_\_\_

전 화 번 호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